한국경호경비학회 – 제41호(2014): 153–183
투고일 2014. 10. 31, 심사일 2014. 11. 14, 게재확정일 2014. 12. 12

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활동 및 조직체계 연구 : 영국·미국·프랑스·우리나라의 국내정보기구를 중심으로

문 경 환

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활동 및 조직체계 연구 : 영국·미국·프랑스·우리나라의 국내정보기구를 중심으로

문 경 환*

〈요 약〉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 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주제어 : 국내정보기구, 정보공유, 보안부,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목 차

Ⅰ. 서 론
Ⅱ. 영국·미국·프랑스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
Ⅲ. 우리나라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와의 비교
Ⅳ. 결 론

Ⅰ. 서 론

최근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 및 위협요인의 다양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역시 테러로부터의 위협 수준이 상당히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안보 위해요인에 대응하여야 할 정보기관의 역할 또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에 더해 군사안보 위주의 전통적 안보개념을 넘어 안보위협 요인의 복잡·다양화로 안보의 개념 및 영역이 무한히 확대되면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정보활동 영역에 있어서 국내·외 경계마저 모호해 지면서 각 정보기관 간 효율적인 정보공유와 협력은 그 어떤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더구나 국가정보활동의 목적이 단순한 안보차원을 넘어 '국가이익'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테러 등 국가위난 대응에 필요한 정보활동은 물론 국가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정보공유를 통한 정보기관 간 협력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이 연구는 정보기관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되 특히, 국내안보상황을 위협하는 다양한 '정보 위해요인'들에 대한 대응, 즉 대테러, 대스파이(Counter-espionage), 방첩(Counterintelligence), 대사보타지(Sabotage) 활동 등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정보기구(Domestic Intelligence)의 신설 필요성 등 우리나라 정보조직 또는 활동영역의 재편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대표적인 국내정보조직이라 할 수 있는 연방수사국(FBI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과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그리고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국의 국내 정보기관으로서 보안부(SS : Security Service) 모델과 최근 신설된 프랑스 국내정보조직으로서 국내일반안전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DGSI)이나 이러한 DGSI의 전신인 국내중앙정보국(DCRI : Direction centrale du Renseignement intérieur)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영국·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구와 관련하여 개괄적인 구조나 활동영역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연구[1]가 진행되었으나 국내정보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나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이나 활동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2] 이에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하여 대표적인 선진 국내정보기관으로서 영국의 보안부(SS)와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부(DHS), 그리고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국내중앙정보국(DCRI)을 중심으로 조직체계 및 활동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교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 가능한 구체적인 모델 제시와 함께 이러한 모델들의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국내 정보조직의 신설 등 정보조직 체계 및 활동영역의 재편과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

1) 연현식(2005)과 김선미(2011) 등이 일본 국가정보기관의 역사, 조직 및 기능과 활동에 대해 연구하였고, 임준태(2006)는 독일 정보기관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서동주(2007)와 김광린(2011)은 연방보안부(FSB)와 해외정보부(SVR)로 개편된 이후 러시아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호철(2008)은 국가안전부를 중심으로 중국의 정보조직 및 활동을 소개하였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정보기구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의 정보활동에 대해 기구별로 전반적인 활동이나 대테러활동과 관련해서는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영국의 정보기구에 대해서는 김왕식(2011)이 보안부와 비밀정보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을 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프랑스 정보기구에 대해서는 문경환·이창무(2009)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활동에 대해 연구하면서 일부 소개하였을 뿐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다만, 송은희(2009)가 세계 주요정보기관을 비교하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러시아, 이스라엘의 정보기구 체계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비교, 평가하였다.

Ⅱ. 영국·미국·프랑스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

1. 영국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

1) 영국의 정보조직 체계 개괄

영국의 정보기구는 해외정보기구로서 정보기관법(Intelligence Service Act 1994)에 근거한 비밀정보부(SIS : Secret Intelligence Service)와 국내정보기구로서 보안부법(Security Service Act 1989)을 근간으로 하는 보안부(SS : Security Service), 그리고 기술정보(Technical Intelligence)를 담당하는 정부통신본부(GCHQ : Government Communication Headquarters)와 군 정보조직으로서 국방정보본부(DIS : Defense Intelligence Staff)로 조직되어 있다.

비밀정보부와 정부통신본부는 총리(Prime Minister) 아래 외무부(Foreign and Commonwealth Secretary) 소속 하에 있고, 보안부는 내무부(Home Secretary)에,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부(Defense Secretary)에 소속되어 있다(Jackson, 2009: 129; Burch, 2007: 6).

법률적으로는 보안부법에 의해 보안부의 정보활동과 관련된 활동 규칙이나 임무, 기능이 규정되어 있고, 정보기관법 제정으로 의회의 '정보 및 안보 위원회(ISC :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를 통해 비밀정보부(SIS)나 정부통신본부(GCHQ), 그리고 보안부(SS)의 예산과 행정, 정책을 감독한다.

영국은 오랜 기간 동안 대테러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2007년 5월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영역을 내무부로부터 법무부로 이관하고 내무부는 정보수집과 대테러활동 및 범죄예방 등 경찰활동에 집중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영국은 안전 및 대테러국(OSCT : Office for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을 신설하였고, 총리 주재 하에 매월 국가안전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ttee)를 개최하는 한편 매주 내무 비서관(Home Security) 주관 회의도 개최한다(Jackson, 2009: 115-116).

영국에서 국내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이러한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의 사용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1829년에 런던경찰청(Metropolitan Police Force)이 탄생하면서 경찰이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에 필요

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1883년에 아일랜드공화국군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보국(Central Bureau of Intelligence)이 탄생하였고, 1887년 설립된 특수활동국(Special Branch)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영국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국내정보기구인 보안부와 경찰의 특수활동국의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는데, 국외정보기구 및 전자정보나 기술정보 전담정보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비밀정보부(SIS)와 정부통신본부(GCHQ) 역시 보안부의 주도 아래 설립되었다(Burch, 2007: 6).

2) 영국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의 특징

영국의 국내정보 전담조직으로서 보안부(SS, MI5)는 테러리즘이나 방첩(counterintelligence), 대량살상무기 확산, 조직범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활동을 수행한다.(Burch, 2007: 6) 1989년 보안부법에는 보안부의 역할과 책임을 이렇게 규정해 두고 있다.

보안부의 기능은 국가안보의 보호인데, 특히 국외세력 정보원의 스파이활동(Espionage)이나 테러리즘, 사보타지로 인한 위협과 정치적, 산업적, 폭력적 수단에 의해 의회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거나 약화시키려는 활동으로부터의 보호이다. 또한 국외위협으로부터 영국의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보안부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수행하면서도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와 달리 독립적인 체포권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외정보를 담당하는 비밀정보부를 포함하여 런던경찰청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특수활동국(Provincial Special Branches) 등 영국 내 56개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보안부는 비밀정보부(SIS)나 정부통신본부(GCHQ)는 물론 중대범죄수사청(SOCA : Serious Organized Crime Agency)[3]과 같은 법집행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Jackson,

3) 2006년 설립된 중대범죄수사청(Serious Organized Crime Agency, SOCA)은 2013년 10월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 NCA) 창설로 그 기능과 조직이 흡수되었는데, NCA는 중대범죄나 조직범죄 외에도 경제범죄(사기)와 사이버범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경 보호(무기,

2009: 130) 특히, 대테러활동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컨대 런던 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은 대테러활동에 있어서 국가차원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2006년에는 대테러국(Anti-Terrorist Branch)과 특수활동국(Special Branches) 업무를 통할하여 대테러본부(Counter-Terrorism Command)를 창설함으로써 정보 분석과 수사 및 활동 지원까지를 담당하고 있다(윤태영, 2010: 87-89).

보안부는 국가수준의 대테러정보는 물론이고 구역 단위(regional level)나 지역 단위(local level) 수준의 테러 상황에 대해서도 각 경찰관서의 특수활동국(Special Branches)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보안부에서는 부령(Ministerial guidelines)을 통해 각 특수활동국에 기본적인 활동지침을 제공하는데, 특수활동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9.11 테러 이후 이렇게 여러 해를 거쳐 발전된 조직 체계를 통해 경찰과 보안부는 상호협력 하에 아일랜드공화국군이나 국내외 테러 및 극단주의자들로부터의 테러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52개 경찰관서와 보안부 간의 관계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 경찰은 구역단위 수준의 대테러정보부(CTIUs : Counter Terrorism Intelligence Units)와 대테러부(CTUs : Counter Terrorism Units)를 신설하였고 보안부 역시 구역 단위의 8개 지부를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촉진하였다(Jackson, 2009: 130-131).

또한 2003년에 보안부 감독 하에 설립된 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JTAC : Joint Terrorism Analysis Center)에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파견된 분석관들을 함께 근무토록 함으로써 정보기관 간의 장벽을 깨고 실질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Burch, 2007, p.6).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JTAC)에는 보안부를 비롯하여 경찰, 그리고 비밀정보부를 비롯한 11개 정부부처로부터 파견된 분석관이 보안부장 책임 하에 국가수준(national level)의 국내외 테러위협에 대한 정보분석 역할을 수행하여 테러리즘의 경향과 조직,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장은 보안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동테러리즘센터의 분석관들은 특별히 보안부의 국제대테러

마약 등 수입 금지물품 밀수) 등 업무를 담당하고, 대테러 업무는 런던경찰청과 보안부에서 계속 수행한다.(www.nationalcrimeagency.gov.uk, 2014. 10. 4 검색)

(International Counter Terrorism) 및 대스파이(Counter Espionage), 대대량무기확산(Counter Proliferation)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보안부에서 수집, 분석된 정보는 총리 산하 합동정보위원회(JIC : Joint Intelligence Committee)를 통해 장관(Minister)을 비롯한 정부 각료(senior officials)에게 보고된다(한국국가정보학회, 2013: 425)[4].

이렇듯 영국 보안부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정보공유 체계'(mechanism to coordinate sharing of intelligence)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근거한(well defined set of national laws) 강력한 협력체계(well defined executive structure, strong executive coordination)와 독립적인 평가체계(independent assessment process), 그리고 잘 갖춰진 통제(감독) 조직과 절차(oversight structure and procedure)를 장점으로 들 수 있다.

2. 미국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

1) 미국의 정보조직 체계 개괄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대테러활동의 효율적 통합 조정을 위해 2002년에는 국토안보부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를 제정하여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설치하였고, 2004년에는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제정을 통해 국가정보장(DNI : Director fo National Intelligence)을 신설함으로써 정보기관 간 정보 공유 협력 강화를 시도하였다.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2004년 신설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장 아래 16개 정보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중앙정보부(CIA : Central Intelligenc Agency)를 비롯하여 국방정보부(DIA : Defense Intelligence Agency), 국가정찰국(NRO :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국가안보국(NSA : National Security Agency)는 물론 연방수사국(FBI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국가안보처(National Security Branch)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정보분석국(Offfice of Intelligence & Analysis)도 포함된다.

대통령 직속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정보국을 제외하고는 여타 정보기구는 모두 특정 행정부처에 소속되어 정보업무를 수행한다. 연방수사국과 마약단속국

4) 합동정보위원회에는 각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인력과 지역별 및 분야별 분석팀이 모여 각종 위협과 위험을 평가한 후 일일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총리 및 내각에 보고한다.

(DEA :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고, 국방정보부(DIA)와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 그리고 국가지리공간정보국(NGIA : 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은 국방부 소속의 정보기구이다.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에서는 국가정보장(DNI)의 임무를 '정보공동체의 책임자로서 대통령 및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국토안보회의(Homeland Security Council) 등에 대한 자문과 정보 보고 책임, 합동정보공동체회의(JICC : Joint Intelligence Community Council) 주관, 국가정보프로그램(National Intelligence Program) 운영 및 감독, 국가대테러센터(NCTC :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감독 및 여타 국가정보 관련 센터 설립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경찰권이나 소환권, 법집행 권한과 국내정보기능을 제외하고 인간정보활동을 통한 국외정보의 수집과 다른 정보기구 및 부처 간의 조정 역할 등을 임무[5]로 규정하고 있다.[6]

또한,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을 토대로 설립된 국가대테러센터(NCTC)와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telligence Center)는 국가정보장(DNI)의 요구에 따라 ① 테러 및 대테러와 관련되어 미국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분석, 종합하고 ② 대테러활동에 대한 전략적 실행계획(Strategic operational planning)을 수립하며 ③ 정보기관이 임무달성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④ 이미 알려져 있거나 혐의가 있는 테러리스트와 국제 테러단체들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7]

2) 미국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 체계

미국의 대표적인 국내정보조직으로는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를 들 수 있는데, 연방수사국의 경우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정보기능은 국가안보처(National Security Branch)에서 수행하는데, 그 아래에는 대테러과(Counterterrorism division)와 방첩과(Counterintelligence division), 정보과(Directorate

5) Executive Order 12333에 의하면, CIA의 주요 임무는 해외정보 및 방첩정보의 수집, 생산, 배포와 마약 생산 및 거래에 관한 해외정보의 수집, 생산, 배포, 그리고 국외 방첩활동 및 국가정보장과 법무장관 승인 범위 내 국내 방첩활동, 대통령이 승인한 특수공작 등이다.

6)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section 1, sec 1011

7) US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Laws and Regulations Handbook, 제1021조, pp.130-133; p.151

of Intelligence), 그리고 대량살상무기과(Weapons of Mass Destruction Directorate)를 두고 있다. 수사는 'Criminal, Cyber, Response and Services Branch'에서 수행하는데 하위 조직으로 범죄수사과(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와 사이버수사과(Cyber Division), 중요사건대응팀(Critical Incident Response Group), 국제범죄수사과(International Operations Division) 등을 두고 있고, 과학기술처(Science and Technology Branch)와 정보통신처(Information and Technology Branch), 인사처(Human Resources Branch) 등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 공격의 사전예방 및 테러발생 시 사태 수습을 목적으로 2002년 11월 제정된 국토안보부법(Homeland Security Act)에 근거하여 22개 행정부처를 통합, 약 17만 명의 인원을 흡수하여 탄생하였다. 주요 임무는 중앙정보국이나 연방수사국 등 관련 정보기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 공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의 제조, 반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국경경비와 재난대비, 화생방 대비, 세관 관리 및 이민업무 등도 수행한다(국가정보포럼, 2006: 190).

특히, 미국 내 테러리스트의 공격예방 및 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응능력 강화, 테러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및 재건 등의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이에 따라 테러예방 및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 및 이에 따른 부처 간 조정, 테러정보수집,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연방수사국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이호용, 2009: 240).

국토안보부에서 정보업무를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는 정보분석국(Office of Intelligence & Analysis)이라 할 수 있는데, 정보분석국의 주요 임무로는 정보분석을 통한 위협의 인식과 국내안보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공유 및 정보관리 등이다. 정보분석국에는 국장 아래 분석팀, 미션 지원팀, 계획 및 정책, 성과 관리팀, 정보 공유 및 관리팀, 방첩팀, 대테러팀(Homeland counterterrorism), 현용정보팀(Current Intelligence), 국경안전팀, 작전팀, 사이버 및 기반시설팀 등을 두고 있다.[8)]

정보분석국은 정보공동체 내에서도 독특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각 주나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영역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내 안보와 관련된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Homeland Security

8) www.dhs.gov/xlibrary/assets/org-chart-ianda.pdf

Enterprise)을 주도하는 한편 State and Major Urban area Fusion Center를 운영함으로써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간에 양방향 정보 공유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9)]

3) 미국의 국내정보 전담기구 설립 논의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기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내정보를 '전담'할 독립된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Burch, 2007: 7)

이에 대해 Burch는 효과적인 국내정보활동 조직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활동 목적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의 구상인데, 즉 법집행기관은 처벌(prosecute)을 목적으로 하고, 정보기관은 정보수집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보공유를 위한 국가차원의 융합(fusion)조직의 필요성, 세 번째는 시민의 자유보호와 효과적인 감독방안 마련이라 할 수 있다(Burch, 2007: 1).

(1) 새로운 국내정보 전담 기구의 신설을 주장하는 입장

Burch(2007: 2)는 미국 내 이러한 국내정보 전담기구의 도입에 있어서 실현가능성(feasibility), 적합성(suitability), 수용성(acceptability)을 중심으로도 검토하였는데, 새로운 정보기구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장점으로는 우선 향후 발생 가능한 새로운 테러 공격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으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 간의 경쟁적 관계 유지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FBI의 경우에 있어서 정보활동은 결국 법집행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독립적인 정보기구가 신설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 번째 장점으로는 독립적인 국내정보 전담기구를 신설할 경우 비노출 활동을 수행하거나 그러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연방수사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연방수사국이 두 가지 기능, 즉 국내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안전 또는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그런 이유로 영국의 보안부(SS)와 같은 수사권을

9) www.dhs.gov/state-and-major-urban-areas-fusion-centers

가지지 않은 완전한 '국내정보 전담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Svendsen, 2012: 383-395).

9.11 의회 조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FBI의 문제점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연방수사국의 분권화된 조직구조와 적절치 못한 정보기술이 관련된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분석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대테러 정보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 알카에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으며, 세 번째로는 연방수사국의 이러한 단편적인 수사정보가 정책결정자에게 국가 차원의 테러로까지 이를 수 있음을 전달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를 신설하였고, 국가정보장과 국가대테러센터(NCTC)도 신설하였다. 또한 연방수사국 조직을 개편하여 현장정보단(FIGs : Field Intelligence Groups)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대테러센터와 주 또는 지방 조직들 간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과 정보 공유에 있어서 조직 간 장벽이나 내부 갈등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언급한 국토안보부 내 정보분석국에서 운영 중인 State and Major Urban area Fusion Center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간에 양방향 정보공유의 허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2) 새로운 국내정보 전담 기구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

새로운 국내정보 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의 경우에는 연방수사국과 연계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독립된 기구를 신설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정보기구를 신설할 경우 정보공유의 효과성에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당연히 시민의 자유와 통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새로운 국내정보 전담기구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독일의 국내정보 기구가 법집행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점을 예시하는 지적의 경우에는 독일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독일의 경우 과거 동독의 정보기관이 정보와 수사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서 권한을 남용했던 점을 이유로 법집행기관으로부터 국내정보조직을 분리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내정보 전담조직의 신설 여부는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Burch: 16-18).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정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 보다는 다른 대안으로서 국가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장, 그리고 국토안보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건 법집행 기관과 정보기관의 융합된 형태의 조직 신설이냐 아니면 독립된 국내정보 전담조직의 신설이냐의 문제가기 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정보공유, 그리고 이러한 조직에 대한 감독일 수밖에 없다.

Burch는 이에 대해 국가정보장과 국가대테러센터의 신설로 국내정보 및 해외정보를 통합하고,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정보기능의 전문화를 실현했음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이러한 시도들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거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2007: 19).

9.11 테러 이후 국가정보장 및 국토안보부의 신설이나 연방수사국의 변화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이 국가방첩실(ONCIX : Office of 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의 조직 변화이다. 기존 FBI 아래 두었던 국가방첩실은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정보장 아래로 재편되었다(장노순, 2009: 188). 국가방첩실의 책임자인 국가방첩관(NCIX :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은 매년 국가정보전략(NIS :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에 따라 국가방첩전략(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을 수립하고, 국외로부터의 정보위협을 평가분석하며, 정보수집활동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0]

(3) 새로운 국내정보 전담 기구 모델 검토

Jackson(2009)은 미국에 있어서 새로운 국내 정보기구 신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모델을 제시했는데, 크게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정보기관, 즉 중앙정보국(CIA)이나 연방수사국(FBI), 그리고 국토안보부(DHS)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국내정보 전담기구를 두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새롭게 변형된 신설조직을 창설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연방수사국(FBI) 아래에 국내정보 전담기구를 두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방수사

10) http://www.dni.gov/index.php/about/organization/office-of-the-national-counterintelligence-executive-what-we-do(2014. 10. 4 검색)

국는 기히 법집행과 국내 대테러, 그리고 국내 방첩업무를 맡고 있고, 9.11 테러 이후에는 국내 대테러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히 합동대테러 태스크포스(JTTFs : Joint Terrorism Task Forces)와 현장정보팀(Field Intelligence Group 등), 그리고 법집행기관의 분석팀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앞에서 보았듯 정보 기능에만 전념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함께 법집행기능과 정보기능 간 책임의 문제, 그리고 (수사/정보 간) 직업 문화의 차이로 인해 쉽게 맞물려 돌아가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컨대 FBI 내 국가안보처(National Security Branch) 아래 대테러과와 방첩과, 정보과 등이 존재하지만, 정보과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하는 동시에 일반적인 범죄정보활동을 하고 있고, 대테러과나 방첩과 역시 법집행과 관련된 부분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모델로는 중앙정보국(CIA) 내에 국내정보 전담기구를 두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국내정보와 국외정보 모두를 통할할 수 있고, 양측 모두 정보활동을 하는 업무 성격 상 문화적 차이도 적어 상호 정보 공유를 하는 데에 있어 효과적일 거라는 것이다. 또한 비슷한 분석 기술을 가진 분석관들끼리 상호 병렬적이거나 위임하는 형태 등으로 분석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고 통합적인 정보관리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의 경우에는 보다 더 투명하고 공개된 활동으로 국외정보활동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국민 신뢰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역사적으로 권한 남용 등에 기반한 중앙정보국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모델은 국토안보부(DHS) 내에 하부 조직으로 두는 방법이다. 이 경우 이미 국토안보부 내에 설립, 운영 중인 국가기반시설 위험분석센터(HITRAC : Homeland Infrastructure Threat and Risk Analyis Center)나 이민국(USCIS :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해안경비국(USCG : Coast Guard) 등과도 정보 공유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토안보부 내 여러 기능과 여타 기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조직 편제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절차에 있어서도 매끄럽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위에서 본 세 가지 모델은 모두 기히 설립되어 있는 정보기구, 즉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그리고 국토안보부 조직 내에 하위 조직으로서 대테러나 방첩 등 국내 정보활동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모델들이나 네 번째 모델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의 경우에도 Jackson(2009)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두 가지의 유형을 제시하였는데[11], 첫 번째 모형은 기존의 정보 기구들, 즉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는 그대로 둔 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방 수준의 조직을 신설하여 국내정보, 특히 대테러 정보활동을 위한 중앙 허브(central hub)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state) 단위와 구역(region) 단위, 지방(local) 단위 조직과의 관계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국가대테러센터와 같이 중앙정보국의 대테러센터(Counterterrorism Center), 연방수사국의 방첩과(Counterterrorism division)를 비롯하여 최소 10여 개의 정보 관련 기구로부터 파견 나온 분석관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의 단점으로는 여전히 기존의 기구들 가운데 법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즉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같은 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집행 기능을 완전하게 분리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 간의 문화적인 차이 역시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자(정보사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국가대테러센터와 같은 기존의 조직과 중복(redundancy)됨으로써 효율성 저하 및 기관 간 업무중첩(duplica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관 간 책임회피와 책임분산의 문제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모형은 현재의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방안이다. 즉 현재 국내정보활동을 담당하는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그 강화된 기구에 여타 국내 정보기구, 즉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의 '정보' 기능만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 모형과 같이 별도 조직을 신설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의 중첩이나 조직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조직 신설을 위한 별도의 예산 추가도 필요치 않다. 다만, 이러한 하이브리드(hybrid) 국내 정보조직의 경우 현재 국토안보부가 겪고 있는 문제, 즉 제각각 독립적인 정보기구들 간의 실질적인 정보 공유나 협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11) Jackson은 완전한 집권형 모델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모든 조직을 완전히 없애고 대신 새롭게 이를 대체할 기구를 신설하자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모델로 여기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 외에도 현재의 국내정보조직 체계를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interconnect)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기관 간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의 장점은 현재의 상태를 가장 잘 유지한 상태에서 국내정보활동, 특히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정보 기구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즉, 이 모형의 특징은 기관 간 연결과 정보공유 강화가 핵심이다. 정보 공동체는 물론 주 정부와 구역 단위 및 지방 정부의 법집행기관이나 민간영역에 이르기까지 테러 정보의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ISE(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와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와의 양 방향 정보공유와 민간영역과의 정보공유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남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공유 체계와 표준화 된 계층화, 그리고 운용 프로그램과 절차 등의 표준화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연방정부로의(to the federal level) 정보 전달만이 아닌 연방정부로부터의(from the federal level) 정보 전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Jackson, 2009: 123-147).

〈표 1〉 미국 국내정보 전담기구 신설 논의 주요 모델

구 분		특징 및 장단점
기존 조직 내 신설	FBI 내 신설	비용은 절감되나 법집행기능과 정보기능 간 책임회피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갈등 우려
	CIA 내 신설	국내외 정보를 통합하여 효과적인 정보공유 및 관리가 가능하나 정보공개의 투명성 확보 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됨.
	DHS 내 신설	DHS의 조직구조 상 더욱 복잡한 관계로 인해 처리절차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
별도 독립기구 신설	FBI/DHS의 상위조직 신설	FBI와 DHS 내 국내정보활동만 통합 관리하는 상위조직 신설 방안으로 기존 조직 간 업무중첩 문제가 제기됨.
	FBI/DHS의 국내정보기능만 이전, 통합	실질적인 정보공유 방안 마련이 핵심
기존 조직 간 연계 강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간 양방향 정보공유체계 및 프로그램, 절차 마련이 핵심

3. 프랑스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

1) 프랑스의 정보조직 체계 개괄

프랑스의 정보기구는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내무부 아래 국내일반안전국(DGSI : 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과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의 대외안보총국(DGSE), 그리고 군사정보부(DRM)와 국방보안부(DPSD)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안보총국(DGSE)은 1982년 설립되었는데 전략국, 첩보국, 공작국, 기술국, 행정국 등으로 조직되어 있고,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국내일반안전국(DGSI)은 정보활동국과 기술국, 일반 행정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2)]

국내일반안전국(DGSI)은 2008년에 설립되었던 국내중앙정보국(DCRI : Direction centrale du Renseignement intérieur)이 폐지되면서 2014년 5월 2일 신설되었는데, 기존 국내중앙정보국(DCRI)의 업무를 승계하여 주로 대스파이,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경제주권 수호 등 각종 위협에 대응한 정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2) 프랑스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

프랑스에서 국내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일반안전국(DGSI)은 기존 국내중앙정보국이 2008년 7월 1일자로 경찰청 소속의 기존 일반정보국(RG : Renseignements Généraux)과 국토감시국(DST : Direction de la Surveillance du Territoire)을 통합하여 내무부 아래 신설되었다가 2010년 국내중앙정보국이 사르코지 대통령에 관한 악성 루머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을 계기로 개인의 사생활침해 문제 및 정치적 문제 등으로 비화되면서 2014년 4월 30일 데크레(Le décret du 30 avril 2014)를 통해 2014년 5월 2일 경찰청 소속에서 내무부 소속으로 이전, 재편되었다.[13)]

국내일반안전국의 전신인 국내중앙정보국은 우리나라의 경찰청 정보국과 매우 유사하여 경찰청 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14)] 대테러국(Terrorism), 대스파이국(Counter-

12) 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4/05/12/la-dcri-se-transforme-en-dgsi_4415032_3224.html

13) http://www.interieur.gouv.fr/Actualites/L-actu-du-Ministere/Reforme-du-renseignement-interieur

14) www.police-nationale.interieur.gouv.fr/Organisation/Direction-Centrale-du-Renseignement-Interieur

Espionnage), 폭력 및 파괴행위 전담국(Violent Subversion), 경제보호국(Economic Protection), 기술국(Intelligence Technology), 국제문제국(International Affairs), 행정국(General Administration) 등으로 구성되어 "프랑스 영토 내에서 국가 이익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에 대한 대응"을 기본으로 하여 테러 및 국가의 권위와 안전에 대한 비밀 또는 국가이익에 대한 침해 활동의 예방과 처벌, 국가의 안위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전자통신의 감시 및 전자통신기술과 관련된 범죄에 대응하는 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였다. 여기에는 극단적 성격, 동기, 행동 방식에 의해 국가안전(sécurité nationale)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개인, 단체 및 조직에 대한 감시와 사회현상 분석업무까지를 포함하였다.[15]

Ⅲ. 우리나라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와의 비교

1. 우리나라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 개관

1) 조직 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같은 형태의 국내정보 전담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국내안전관리국(DGSI)의 전신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유사하게 경찰청 정보국에서 대부분의 국내정보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보안정보[16]활동 가운데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활동에 대해서만 국가정보원에서 맡도록 국정원법(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17]

대테러정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를 통해 테러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통합 관리한다.

---

15) 데크레 제2008-609호 제1조, 2008년 6월 27일 제정

16) 정책정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안정보 또는 방첩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국내보안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17) 국가정보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 범죄정보까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범죄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수행하는 범죄정보활동은 제외하기로 한다(문경환·이창무, 2014: 13 이하 참조). 또한, 통일부나 외교부에서도 일부 정보활동을 수행하나 여기서는 국가정보원법이나 경찰청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률에 규정된 국가정보활동 수행기관만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국가정보원 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내정보기관으로서 경찰청 정보국의 조직체계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정보국장 아래에는 특별히 정책정보[18]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하는 정보심의관을 두고 있고, 그 아래 4개 과에서 경찰의 주요 치안정책을 비롯한 국가정책과 관련된 정책정보의 수집, 분석 활동과 경제, 사회, 노동 분야 등 경찰의 치안활동과 관련된 '치안정보'의 수집,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9]

경찰청 아래에는 16개 지방경찰청이 있는데,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경찰청에는 정보과장 아래 정보 1·2·3·4계를 두고 있고, 서울경찰청의 경우에는 정보관리부장 아래 정보1과와 정보2과를 두고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서의 경우에는 정보보안과 아래에 정보계와 보안계를 두어 정보계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정보활동은 이러한 정보국을 중심으로 한 '정보' 기능의 활동 외에도 대북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보안기능 및 외국인 관련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외사기능을 비롯하여 수사·형사 경찰과 심지어 전국의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찰의 정보활동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범죄정보활동을 제외하고도 치안질서를 위협하는 대테러 관련 정보활동 등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업무의 범주

국가정보원의 경우 앞에서 보았듯 국가정보원법에서 대테러 및 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활동에 대해 업무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그리고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선 경찰법 제3조에는 국가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2조 제3호에는 경찰의 직무 범위 안에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18) 경찰청에서는 정책정보 업무를 '기획정보'라고도 한다.

19)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제14조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장은 ①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조정 ②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③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④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⑤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및 배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서는 경찰청 정보국의 직무 분야를 '정치·경제·사회·학원·종교·문화 등'은 물론 '정책정보'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찰청의 '치안정보' 활동에 국내 정보활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방첩활동'이나 '대테러정보활동'이 포함되는 지가 중요한 논점이라 하겠다.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안정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면, 현행법 상 '치안정보'의 용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치안정보(治安情報)라는 용어가 '치안'과 '정보'를 조합하여 만든 단어라는 걸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역사적으로 '치안'이라는 용어는 일본이 당시 조선의 식민통치를 위해 설치한 한국주답사령부(韓國駐劄司令部) 아래 한국주답헌병대(韓國駐劄憲兵隊)가 1905년 1월 '경성 및 그 부근에서의 치안에 관한 경찰은 한국경찰을 대신하여 일본군이 담임한다.'고 포고하거나 '일본군의 행동 방해와 집회 결사 및 신문·잡지·광고 그 외의 수단으로 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자 등에 대해 사형 등을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군령을 발표하면서 사용하였다. 또한 '군사경찰 시행에 관한 내훈'에서 '치안에 관련되는 경찰사항에 관해 한국 군대의 사용 및 경찰권의 집행을 허락하여야 한다.'고도 하였다(김성수 등, 2010: 178-179).

여기에서 '치안'과 '경찰'의 개념이 동일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경찰..'이나 '치안문란...', '치안과 관련된 경찰사항...'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찰법상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나 사전적 의미인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보전'[20]하는 경찰의 활동으로 보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특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에서는 경찰청 정보국장의 사무로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라고 규정하여 경찰정보활동 영역에 있어서 수집·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치안정보'를 구체적으로 예시·열거함으로써 '경찰정보'활동의 영역이나 범위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나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보전'하는 경찰의 활동에 대테

20) krdic.naver.com(네이버 국어사전), 2014. 10. 5 검색

러활동이나 방첩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면, '치안정보활동'의 범주에도 대테러 정보활동이나 방첩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경찰청 경비국 내에 대테러 활동을 전담 수행하는 위기관리센터 대테러계를 두고, 보안국 내에 대북 및 방첩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두어 전국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테러활동 및 방첩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도·조정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활동을 위한, 특히 대테러 및 방첩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위한 보다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된다.

2. 영국·미국·프랑스 국내정보조직체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국내정보 조직체계 비교

국내정보기구의 조직체계 비교에 앞서 우선 '국내정보활동'에 대한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안보 위협요인의 복잡 다양화로 인해 안보의 개념이나 영역이 무한히 확대되면서 지리적 또는 물리적 경계를 통해 국내와 국외 정보활동을 구분하는 것 또한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여기서는 주요 국가들의 '국내 정보기구'의 공통적인 활동 영역을 통해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표2에서 보듯이 국내정보기구의 활동 영역은 대체적으로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대테러활동(Counterterrorism), 그리고 조직범죄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의 활동으로 규정지을 수 있겠다. 특히 방첩과 대테러활동이 국내 정보기구의 역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조직체계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았듯 영국은 내무부 소속의 독립된 국내정보 전담기구로서 보안부(SS)를 운영하고 있는 데에 반해, 미국은 독립적인 국내정보 전담조직을 두지 않고,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 내에 국내정보활동을 담당하는 부서, 즉 연방수사국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처 아래에 대테러과와 방첩과, 정보과, 대량살상무기과를 두고 있고, 국토안보부에는 정보분석국을 두어 이러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존 경찰청 소속의 국내중앙정보국(DCRI)을 최근 내무부로 이전하여 국내일반안전국(DGSI)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여전히 기존의 국내중앙정보국과 같이 대테러, 방

첩을 비롯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조직범죄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전담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들 나라와 달리 대테러, 방첩, 국제범죄조직을 비롯하여 대정부전복이나 대공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도록 국가정보원법에 규정해 두고 있는데, 이는 곧 국가정보원이 국외정보활동과 동시에 대표적인 국내보안정보활동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와 방첩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 경찰청 정보국에서 맡고 있는 치안정보의 범주에 대테러나 방첩 관련 정보활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찰청 정보국 역시 이러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영국 · 미국 · 프랑스 및 우리나라의 국내정보활동 조직 비교

구 분	정보 기구	소속 및 업무 범주
영국	보안부 (SS)	내무부 소속 **대테러, 방첩,** 대량살상무기 확산, 조직범죄 등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처	법무부 소속 **대테러, 방첩,**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국토안보부(DHS) 정보분석국	**대테러, 방첩** 등
프랑스	국내일반안전국 (DGSI)	내무부 소속 **대테러, 대스파이, 방첩,**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한국	국가정보원	**국외정보 및 대테러, 방첩,** 대정부전복, 대공, 국제범죄조직
	경찰청 정보국	치안정보(대테러, 방첩 등), 정책정보

2) 시사점

국내안보상황을 위협하는 다양한 정보 위해요인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정보 전담조직, 특히 대테러 및 대스파이활동, 그리고 방첩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 또는 현재 조직체계의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논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대테러 및 대스파이, 방첩활동 등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기구'가 과연 필요한가의 문제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국내정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국내정보 전담기구 신설과 관련된 핵심논제 가운데 첫 번째 논제, 즉 대테러 및 대스파이, 방첩활동 등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기구'가 과연 필요한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예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테러 정보의 효율적 통합 및 조정을 위해 정보 공유 강화 차원에서 국가정보장(DNI)을 신설하는 외에 테러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국토안보부(DHS)를 신설하였다. 또한 연방수사국(FBI) 개편을 통해 대테러 기능과 방첩 기능을 강화하였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국내 정보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영국의 보안부(SS)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원이 국외정보활동은 물론 국내정보활동 가운데 보안정보 활동, 특히 방첩과 대테러, 대정부전복, 국제범죄조직, 그리고 대북 정보활동 임무를 맡고 있다. 물론 조직 내 편제를 통해 국외정보기능과 국내정보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는 있지만 조직 전체로 볼 때에는 국외정보활동과 국내정보활동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부 특별범죄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내란이나 외환죄를 비롯하여 반란죄나 암호부정사용죄,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 상 규정된 죄와 국가보안법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국외정보활동 기능과 국내정보 기능의 분리 필요성이나 정보기구로부터의 수사권한 분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정보공유에 있어서 테러정보통합센터를 통해 테러정보를 통합 관리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외정보를 전담하는 국가정보원과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테러 및 방첩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는 인력이나 조직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국내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정보국과의 정보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 국가정보원법상으로는 국가정보원에서 대테러 및 방첩 정보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찰청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테러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과는 별개로 경찰에서는 테러정보나 방첩정보를 수집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테러 및 방첩과 관련된 정보활동에 있어서 국가정보원과 경찰과의 업무 중첩 해소는 물론 영국의 예에서와 같이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정보공유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물론 영국의 보안부나 미국의 FBI, DHS, 프랑스의 DCRI의 역사적 탄생 배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국내 정보기구를 새롭게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와 신설한다면 어떤 모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역사적 배경이나 국가 및 사회적 상황, 국민들의 인식 등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중화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독립적인 정보기구를 신설함으로써 대테러 및 방첩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과 이러한 집중화로 인해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침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랜 논쟁의 핵심이라 하겠다.

두 번째 논제인 '국내정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효율적인 정보공유와 보다 발전적인 형태의 정보체계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데, 국내정보 전담기구의 바람직한 형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방수사국 내에 국내 '정보' 기능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경우에는 연방수사국 조직 특성 상 법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과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 병존함으로 인해서 신설되는 '국내정보 전담기능' 역시 현재 연방수사국 내 국가안보처(National Security Branch) 아래 대테러과와 방첩과, 정보과에서 '범죄정보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고, 국토안보부 내에 두는 경우에는 국토안보부의 조직 특성 상 22개의 부처가 통합 구성됨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국내정보 전담조직' 역시 내부 편제 상 여러 기능과의 관계 설정이나 프로세스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외정보 전담기구인 중앙정보국(CIA) 내에 국내정보 전담기구를 두는 경우에는 모두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문화적 동질성'이나 실질적인 '정보공유', '업무처리 방식의 유사성'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한남용 등으로 인해 실추된 국민신뢰 등 조직 이미지가 결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례에도 투영해 볼 문제이다.

기존 조직 내에 설치하는 방안과 달리 독립적인 별도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현재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을 단순화 하는 방안이나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의 국내중앙정보국(DCRI)처럼 현재 국내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청 정보국으로 하여금 방첩 및 대테러, 대스파이 활동을 전담케 하는 방법과 국가정보원 업무 가운데 방첩 및 대테러, 대정부전복, 국제범죄조직, 대북 정보활동과 관련된 국내보안정보 활동을 분리하여 별도 정부부처 아래 독립적인 국내정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국 보안부 내 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JTAC)나 미국 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 및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대테러 및 방첩활동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협의 및 실행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국 보안부와 같이 경찰은 물론 국외정보를 전담하는 국외정보기구를 비롯하여 방첩활동 및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유관 기구들의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분석관 파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사례와 같이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 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두고도 '법집행 기능'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빚어지는 구조적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보기구 기능 가운데 '법집행기능'을 완전하게 배제함으로써 순수한 정보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프랑스 모델과 같이 경찰청 정보국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테러, 대스파이 및 방첩정보활동을 수행하게 하거나 완전히 독립된 국내정보 전담기구를 신설할 경우에는 미국의 예와 같이 국내외 정보를 통합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상위 조직 신설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Ⅳ. 결 론

이상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 국내정보기구의 조직체계 및 활동범위와 영국 국내정보기구인 보안부(SS)의 특징 및 미국의 국내정보기구로서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의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프랑스 국내정보기구로서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그 전신인 국내중앙정보국(DCRI)의 특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내정보 전담기구의 도입 필요성이나 도입 방향 등 몇 가지 시사점과 함께 도입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결국 국내정보 전담기구의 신설 필요성이나 도입 방향 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정보공유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가안보의 확보와 기관 간 견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간의 간극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입 가능한 바람직한 모델 구상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미국의 예에서 보았듯 이러한 정보기구 신설과 관련된 국민의 인식이나 신뢰의 문제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의 핵심이 국가안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정보활동의 효율화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 권리 보호에 있음은 재삼재사 강조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그런 이유로 이러한 국가정보조직체계에 대한 변화 시도의 목표가 보다 강력한 정보기관의 위상 정립에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쪼록 정보기구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이나 신뢰 회복을 통해 보다 효율성 높고 국민의 자유나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보조직 체계 구축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가정보포럼. (2006).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김광린. (2011). 러시아의 정보기구의 현황과 활동 : FSB와 SVR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4(1), 185-220.

김선미. (2011). 일본의 정보기관 : 연혁, 조직, 활동. 국가정보연구 4(1), 141-183.

김성수 등. (2010). 한국경찰사. 경기: 경찰대학.

김왕식. (2011). 영국 보안부와 비밀정보부의 조직과 활동양상. 국가정보연구 4(1), 107-140.

문경환·이창무 (2009). 국정원 국내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및 활동방향 연구. 국가정보연구 2(2), 95-123.

---------. (2011). 경찰정보학. 서울: 박영사.

서동주. (2007). 러시아 정보기관의 개편과 역할 변화 : FSB(연방보안부)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31(2), 135-161.

송은희. (2009). 정보환경의 변화 및 세계 주요 정보기관의 비교. 서석사회과학논총 2(2), 293-312.

연현식. (2005). 일본의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소연구 : 역사, 조직, 기능과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63, 287-303.

윤태영. (2010). 영국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 체계와 전략. 한국위기관리논집 6(1), 82-100.

이기덕·문경환. (2011). 대테러 관련 법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테러정보 수집권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4(1), 7-34.

이대성. (2004).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9, 105-134.

이호용, (2009). 효율적인 국가대테러조직체계의 구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1), 231-254.

이호철. (2008). 중국의 정보조직과 정보활동 : 國家安全部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1(2), 117-138.

임준태. (2006). 한국 정보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독일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 377-419.

장노순. (2009). 9.11 이후 미국의 방첩전략과 조직에 관한 연구: ODNI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2(2), 181-216.

정상화. (2009). 일본의 테러리즘 대응책: 정보기구의 관련법규의 분석. 국가정보연구 1(2), 175-206.

한국국가정보학회. (2013).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Abraham N. Shulsky & Gary J. Schmitt. (2002). *Silent warfare, 3rd edition.*

Adam D.M. Svendsen. (2012).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and Change : Addressing US Domestic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27(3), 371-397.

Brian A. Jackson. (2009). The Challenge of Domestic Intelligence in a Free Society : a multidisciplinary look at the creation of a U.S. domestic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gency, The RAND Corporation,

Chris Northchott. (2007). The Role, Organization and Methods of MI5,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20(3), 453-479,

Clive Harfield & Karen Harfield. (2006). *Intelligence*, Oxford University press.

Huw Dylan. (2012). The Joint Intelligence Bureau : (Not so) Secret Intelligence for the Post-War World,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27(1), 27-45,

James Burch. (2007). A Domestic Intelligence Agency for the United States :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Intelligence Agenc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Homeland Security, Homeland Security Affairs 3(2).

Mark M. Lowenthal. (2006). *Intelligence, from secret to policy(3rd edition).* CQ Press.

Robert M. Clark. (2007). *Intelligence Analysis(2nd edition)*, CQ Press.

Todd Masse. (2003). Domestic Intelligence in the United Kingdom : Applicability of the MI-5 Model to the United State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Library of Congress.

USA. *(2009). US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laws and Regulations Handbook volume1(2nd edition)*, Washington DC: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William J. Lahneman. (2010). The Need for a New Intelligence Paradig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23(2).

Wilhelm Agrell. (2012). The Next 100 Years :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Intelligence.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27(1), 118-132.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US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Laws and Regulations Handbook

www.nationalcrimeagency.gov.uk

www.intelligence.gov/mission/structure.html

www.fbi.gov/contact-us/fbi-headquarters/org_chart/organizational_chart
www.mi5.gov.uk/home/about-us/who-we-are/organisation.html
www.dhs.gov/xlibrary/assets/dhs-orgchart.pdf
www.dhs.gov/xlibrary/assets/org-chart-ianda.pdf
www.dhs.gov/more-about-office-intelligence-and-analysis-mission
www.police-nationale.interieur.gouv.fr/Organisation/Direction-Centrale-du-Renseignement-Interieur
www.interieur.gouv.fr/Actualites/L-actu-du-Ministere/Reforme-du-renseignement-interieur

【Abstract】

A Study on the Major Country's Domestic Intelligence Operation and Architecture: Focusing on UK, USA, France and Korea

Moon, Kyeong-Hwan

Nowadays, proactive intelligence activities are required because of enhanced nation wide threats of terrorism and complexity of multidimensional factors of national security. South Korea not only need to draw up plans of information sharing among agencies for more effective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but also have to evaluate the structure of Domestic Intelligence Agency and its right direction of activities. In this vein, this paper conducts comparative studies of structures and range of activi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by reviewing U.K, U.S.A, and France cases and suggests a potential model of 'domestic information specified agency' that we can adopt and methods to share information among agencies.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the reviewing of necessity of establishing new 'domestic information specified agency' which will mainly conduct anti-terrorism and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and its appropriate form. After reviewing the cases of U.K, U.S.A. and France, we conclude that overcoming the people's distrust about an invasion of freedom and rights caused by centralized and integrated independent intelligence agency is a prerequisite. Disputable issues of FBI, DHS, and South Korea's intelligence agency cases suggest that plans for restoring trust have to be considered if a new 'domestic information specified agency' is established in NIS. If it is established under government ministries such as MSPA focusing on implementing anti-terrorism and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organizations such as NCTC, NIC, that can carry out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ng with agencies concerned have to be established. Additionally, measures to solve structural problems caused by carrying out law enforcement functions by domestic information specified agency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 Domestic Intelligence Agency, Intelligence Sharing, Security Serv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